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임호선 · 임미애
문금주 · 송옥주 · 이원택
문대림 · 이정문 · 안도걸
안호영 · 김 윤 · 박희승
전용기 · 양문석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농협중앙회와 관련한 임직원 비위,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내부통제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, 농식품부·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.

이와 관련 현행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자로서 가족 채용 제한 등 규제 중이나, 중앙회 상임이사과 조합감사위원장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호타목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타목 중 “회장 및 상임감사”를 “회장·상임이사·상임감사
및 조합감사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고위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.	3. ----- -----. 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 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회장·상임이사·상임감사 및 조합감사위원장
가. ~ 카. (생략)	
타. 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 및 상임감사, 한국은행의 총재·부총재·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, 금융감독원의 원장·부원장·부원장보 및 감사,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	
파. (생략)	파. (현행과 같음)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